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수 자 원 의 조 사 · 계 획 및 관 리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화진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대응 및 수자원 확보 등 안정적인 물관리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, 인공위성을 이용한 공간관측을 통해 연속적인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자원위성의 개발·운영 및 위성 관측자료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수자원영상위성, 수자원통신위성으로 수자원위성의 구체적인 종류를 정함(안 제2조의2 신설)

나.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수집·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의2 신설)

- 환경부장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,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수자원위성)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자원위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위성을 말한다.

1. 수문조사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자원 영상위성
2. 수문조사 정보, 하천의 폐쇄회로(CCTV) 영상정보 등을 수집·배포하기 위한 수자원통신위성

제13조의2(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(이하 “수자원위성 관측망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수집·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수자원위성의 개발
2. 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·운영
3. 수자원위성 관측자료의 수집·처리·배포

4.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수집·활용을 위한 연구개발
 5.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수집·활용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
 6. 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수집·활용에 필요한 사항
-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2조의2(수자원위성)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자원위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위성을 말한다.		
		1. 수문조사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자원영상위성		
		2. 수문조사 정보, 하천의 폐쇄회로(CCTV) 영상정보 등을 수집·배포하기 위한 수자원통신위성		
<u><신 설></u>		제13조의2(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·운영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(이하 “수자원위성 관측망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수집·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		
		1. 수자원위성의 개발		
		2. 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·운영		
		3. 수자원위성 관측자료의 수집·처리·배포		

4.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· 운영 및 정보의 수집 ·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

5.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· 운영 및 정보의 수집 · 활용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

6. 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· 운영 및 정보의 수집 · 활용에 필요한 사항

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수자원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654